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305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305148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721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은

피고,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원

2. E

3. F

4. G

피고 2~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변론 종결 2020. 11. 11

판결 선고 2020. 12. 9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7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 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F, G은 피고D에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 1.

11. 접수 제 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6 .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 판결 제 3쪽 8- L 5행 다. 항을 ' 다. 원고는 2016 . 12. 9. 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 1계약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 변경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 이 사건 변경합 의' 라 한다), 이 사건 변경합의 제1조에서는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계약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제 1계약을 해지하고,해지된 계약에 대해 피고 E, F, G및 원고 대표이사인 H(이하 ' 피고 E 외 3인' 이라 한다) 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고,원고가피고 D에게 납부한 매매 대금 3억원은 피고 E외 3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D에게 어떠한 권리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2조(정산)에서는 '본 합의서 체결 후 원고의 미이 행 특약사항은 피고 E 외 3인이 승계하여 약정기한까지 이행키로 한다',' 매매계약서상 무상이전하기로 한 I의 일부 토지는 분한 전까지 피고 D 에게 영구 사용승낙 및 지역권 설정토록 하고, 2017년말까지

분할 및 피고 D 또는 피고 D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 이전하여야 한다', 제3조(효력 및 기타)에서는 '본 합의서의 효력은 날인 즉시 발생하며 원고와 피고 D가 합의한 상기 조항을 위반할 시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 제 5쪽 아래에서 2행 '합하면,' 다음에 '이 사건 변경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 6쪽 마지막 행 아래에 '⑤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 제2조 중 피고 D에게 이행되어야 할 I의 무상 이전 등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변경합의는 이 사건 변경합의 제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효력을 다시 가지게 된 이 사건 제 1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I의 무상 이전 등 의무의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D가 2020. 1. 15. 자 준비서면에서 위무상이 전의 지연에 대하여 피고 E와 3인과 상호 양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변경합의를 무효로 할 의사 없음은 명백히 밝히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무상 이전 의무가 불이행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변경합의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위무상이 전의 의무는 제2조에 따라 피고 E와 3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위 무상이 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E와 3인의 의무 불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D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원고나 피고 E와 3인의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인 피고 D가 이를 양해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변경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변경합의가 무효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권형관 판사 권비룡

별지